

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(기획재정국 소관)

2021. 4. 19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6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4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4. 5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

가. 총 괄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액 | 기 정 액 | | | 1회추경 (안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| | 소 계 | 당초예산 | 간주처리 | | |
| 계 | 573,437 | 561,021 | 545,733 | 15,288 | 12,416 | |
| 일 반 회 계 | 559,374 | 546,958 | 532,501 | 14,457 | 12,416 | |
| 특 별 회 계 | 14,063 | 14,063 | 13,232 | 831 | 0 | |
| 의 료 급 여 기 금 | 504 | 504 | 504 | - | - | |
|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| 294 | 294 | 294 | - | - | |
| 주 차 장 | 13,265 | 13,265 | 12,434 | 831 | - | |

나. 일반회계

○ 세입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액 | 기 정 액 | | | 1회추경 (안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| | 소 계 | 당초예산 | 간주처리 | | |
| 계 | 559,374 | 546,958 | 532,501 | 14,457 | 12,416 | |
| 자 체 재 원 | 139,856 | 139,856 | 139,856 | - | 0 | |
| 지 방 세 | 105,061 | 105,061 | 105,061 | - | - | |
| 세 외 수 입 | 40 | 40 | 40 | - | - | |
| 의 존 재 원 | 385,473 | 382,091 | 367,634 | 14,457 | 3,382 | |
| 지 방 교 부 세 | 12,684 | 12,684 | 12,591 | 93 | - | |
| 조정교부금등 | 116,819 | 116,819 | 116,546 | 273 | - | |
| 보 조 금 | 255,970 | 252,588 | 238,497 | 14,091 | 3,382 | |
| 보 전 수 입 등 | 34,045 | 25,011 | 25,011 | - | 9,034 | |
| 순세계잉여금 | 34,045 | 25,011 | 25,011 | - | 9,034 | |

○ 세출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액 | 기 정 액 | | | 1회추경 (안)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| | 소 계 | 당초예산 | 간주처리 | | |
| 계 | 559,374 | 546,958 | 532,501 | 14,457 | 12,416 | |
| 정 책 사 업 | 444,934 | 433,518 | 419,218 | 14,300 | 11,416 | |
| 재 무 활 동 | 2,459 | 1,459 | 1,459 | 0 | 1,000 | |
| 행 정 운 영 경 비 | 111,981 | 111,981 | 111,824 | 157 | - | |

다. 특별회계

○ 세입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액 | 기 정 액 | | | 1회추경 (안)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|
| | | 소 계 | 당초예산 | 간주처리 | | |
| 계 | 14,063 | 14,063 | 13,232 | 831 | - | |
| 자 체 재 원 | 5,246 | 5,246 | 5,246 | - | - | |
| 세 외 수 입 | 5,246 | 5,246 | 5,246 | - | - | |
| 의 존 재 원 | 1,456 | 1,456 | 625 | 831 | - | |
| 보 조 금 | 1,456 | 1,456 | 625 | 831 | - | |
| 보 전 수 입 등 | 7,361 | 7,361 | 7,361 | - | - | |
| 순세계잉여금 | 7,348 | 7,348 | 7,348 | - | - | |
| 내 부 거 래 | 13 | 13 | 13 | - | - | |

○ 세출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예산액 | 기 정 액 | | | 1회추경 (안)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|
| | | 소 계 | 당초예산 | 간주처리 | | |
| 계 | 14,063 | 14,063 | 13,232 | 831 | 0 | |
| 정 책 사 업 | 12,532 | 12,532 | 11,701 | 831 | - | |
| 재 무 활 동 | 93 | 93 | 93 | - | - | |
| 행 정 운 영 경 비 | 1,438 | 1,438 | 1,438 | - | - | |

4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

가. 총괄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예산액 | 기정액 | 1회추경(안) | 증감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총계 | 184,217,977 | 180,442,798 | 3,775,179 | 2.09 % |
| 민원감사담당관 | 201,961 | 200,261 | 1,700 | 0.85 % |
| 기획재정국 | 20,609,515 | 19,609,515 | 1,000,000 | 5.10 % |
| 기획예산과 | 13,272,239 | 12,272,239 | 1,000,000 | 8.15 % |
| 홍보디지털과 | 5,505,818 | 5,505,818 | 0 | 0.00 % |
| 재무과 | 417,982 | 417,982 | 0 | 0.00 % |
| 세무1과 | 474,203 | 474,203 | 0 | 0.00 % |
| 세무2과 | 672,199 | 672,199 | 0 | 0.00 % |
| 부동산정보과 | 267,074 | 267,074 | 0 | 0.00 % |
| 행정문화국 | 147,140,416 | 145,097,946 | 2,042,470 | 1.41 % |
| 행정지원과 | 100,946,998 | 100,890,255 | 56,743 | 0.06 % |
| 문화체육과 | 16,653,731 | 16,229,063 | 424,668 | 2.62 % |
| 마을자치과 | 11,970,561 | 11,766,502 | 204,059 | 1.73 % |
| 교육지원과 | 16,610,658 | 15,253,658 | 1,357,000 | 8.90 % |
| 민원여권과 | 958,468 | 958,468 | 0 | 0.00 % |
| 보건소 | 16,266,085 | 15,535,076 | 731,009 | 4.71 % |
| 보건의료과 | 3,161,191 | 3,161,191 | 0 | 0.00 % |
| 건강증진과 | 12,433,457 | 11,702,448 | 731,009 | 6.25 % |
| 위생과 | 671,437 | 671,437 | 0 | 0.00 % |

나. 기획재정국 부서별 추경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| 연번 | 부서명 | 세부사업명 | 사업개요 | 최종예산액 | 기정액 | 1회추경(안) |
|----|-------|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1 | 기획예산과 | 예비비운용 | ◦ 주요내용 -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대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 | 5,525,428 | 4,525,428 | 1,000,000 |

5. 검토의견

가. 추경예산 규모 및 편성방향(총괄)

(1) 추경예산 규모

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,610억 2,160만원 대비, 124억 1,634만원이 증액된 5,734억 3,795만원으로 2.21% 증가하였으며,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90억 3,400만원과 보조금 33억 8,200만원임.

(2) 편성방향

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

-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
- 시·자치구 민생경제 지원대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
- 국·시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매칭분 등 필수경비 반영
- 본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사업을 반영한 것임.

나.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

-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된 1건이며,

- 지방재정법 제43조¹⁾제1항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” 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10억원 편성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관련 법령 1부.

1)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., 타법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 8. 4.]